

의안번호	제 38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10월 일 (제295회)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 종 필 의원
발의연월일	2010년 9월 일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
----------	----

발의연월일 : 2010년 9월 일

발 의 자 : 김종필 의원

찬 성 자 : 윤성옥 · 정 현 · 황규철 · 김희수 ·
김봉희 · 박문희

1. 제안 이유

- 도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함(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7조 등)
- 나. 일부조항의 자구수정(안 제11조, 안 제13조 등)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2010년 58,091천원 예산 편성됨

(도비 : 44,291 국비 : 13,800)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중 "의무"를 "책무"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비자행정”을 “소비자를 위한 행정”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지사는 센터에”를 “도지사는 소비자가 센터에”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법”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 설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 설 ></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margin-bottom: 10px;">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차공 또는 포장(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제4조 (도의 책무) 도는 제 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p> <p>1. ~ 3. (생략)</p> <p>제7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법</p> <p>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0일 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p> <p>4. "사업자단체"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p> <p>제4조 (도의 책무) ----- ----- ----- ----- 책무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평생교육법」 제 2조제 2호 -----</p> <p>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 -----.</p>

현 행	개 정 안
<p>② ~ ④ (생략)</p> <p>제11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u>소비자행정·피해구제의 상담 처리를 위하여 상담창구인력 1인 이상을 지정배치 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제13조 (피해구제의 처리) <u>도지사는 센터에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u></p> <p>제17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도에 등록할 수 있다.</p> <p>1. 법 제28조 제1항 제 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p> <p>2. ~ 5.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소비자를 위한 행정</u>----- ----- ----- -----.</p> <p>제13조 (피해구제의 처리) <u>도지사는 소비자가 센터에 -----</u> ----- ----- -----.</p> <p>제17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 ----- -----.</p> <p>1. 「<u>소비자기본법</u>」 (이하 “<u>법</u>” 이라 한다) -----</p> <p>2. ~ 5.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령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